

# 2023년 「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」 사업 [창업기업] 모집 공고(수정)

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지역의 유망한 청년(예비)창업가를 육성·지원하는 「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」 사업에 참여할 청년창업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30일  
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

※ 23'.07.14. 수정: 모집 마감일이 기존 7월18일(화)에서 7월 31일(월)로 변경되었습니다.

※ 해외 프로그램(안)은 별도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.

## I 모집 개요

### 사업목적

- 인천 지역 내 역량 있는 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

### 모집규모 및 지원내용

- (모집규모) 10명 내외
  - 해외 진출 희망하는 국가 제안 必 (아시아지역 2개 이상 지역)
- (지원 기술분야) 쏠 기술분야
  - \* 단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
- (지원내용) 사업화 지원금 (최대 1억원), 해외 프로그램 포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, 컨설팅, 멘토링, 후속 연계지원 등
- (협약기간) 협약 체결일 ~ 2024.2 (6개월 내외)

## II

## 신청자격 및 요건

### □ 신청 자격

-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39세 이하('83년6월30일 이후출생)인 자로, 예비창업자\* 또는 사업장소재지(본점,공장,연구소)가 인천광역시인 7년 이내 창업자

\* 예비창업자 : 공고일 현재 ('22.6.30. 기준)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

※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, 선정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 내 사업자등록(본점) 필수

※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(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)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

### □ 신청제한

- 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② 청년창업 챌린지 수혜기업
- ③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### Ⅲ 신청 및 접수

□ **신청기간** : 2023.6.30.(금) ~ 7.31.(월) 18:00 까지

※ 신청 마감일(7.31.) 18:00까지 이메일 도착분까지 유효함

□ **신청방법**

○ 이메일 접수(global@biigwave.org), 압축파일 1개(zip)로 제출

※ 방문, 우편, 팩스 등 신청 불가

□ **제출서류 리스트**

제출서류		작성양식	비고	형식
2023년 청년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(창업기업) 신청서		신청양식	표지 서명 및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	hwp 또는 pdf
2023년 청년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(창업기업) 사업계획서		신청양식	-	hwp 또는 pdf
붙임1	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	별도	해당 세무서, 인터넷 등기소 등	pdf
	예비창업자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			
	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			
	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			
붙임2	국세, 지방세 증명서 각 1부	별도	국세청, 지자체 등	-
붙임3	기타 증빙 서류	별도	사업계획서 상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자료 (어학점수, 자격증, 수상기록 등)	pdf
별첨1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양식참조	-	pdf
별첨2	창업 및 유지 동의서	양식참조	-	pdf

※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('23.3.30.~) 발급본

※ 사실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('23.6.30.~) 발급본

## IV

### 신청 유의사항

-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,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
-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 및 환수됨
-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,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는 없음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
## V

### 지원사항 및 기간

지원기간 : 협약 체결일 ~ 2024.02.29.

지원금 지원

- 평가결과 확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은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전담기관과 창업기업 간 협약 체결

※ 지원금 범위 내 지원금 사용 승인 신청서 제출 → 사업화에 필요한 제품·서비스 구매 및 거래처 비용 선지급 → 사업화 검수 및 증빙서류 제출 → 제출서류 검토 후 창업자에게 지원금 지급

지원 내용

- 창업기업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사업화지원금 및 프로그램을 지원

구분	지원 세부사항																		
사업화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주용역, 지재권취득, 마케팅 등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기업별 최대 <b>1억원 한도 지원(부가세 제외)</b></li> <li>- <b>사업화지원금 지원기간 : 협약 체결일 ~ 2024. 01. 31.</b>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59 427 683 499">지원항목</th> <th data-bbox="683 427 1394 499">지원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59 499 683 571">재료비</td> <td data-bbox="683 499 1394 571">-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59 571 683 678">외주용역비</td> <td data-bbox="683 571 1394 678">-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59 678 683 813">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</td> <td data-bbox="683 678 1394 813">-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, 등록관련 비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59 813 683 884">인건비</td> <td data-bbox="683 813 1394 884">-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59 884 683 1019">지급수수료</td> <td data-bbox="683 884 1394 1019">-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)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59 1019 683 1090">여비</td> <td data-bbox="683 1019 1394 1090">-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59 1090 683 1198">광고선전비</td> <td data-bbox="683 1090 1394 1198">-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59 1198 683 1279">기 타</td> <td data-bbox="683 1198 1394 1279">- 비교견적서 : 3백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필요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항목	지원내용	재료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	외주용역비	-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, 등록관련 비용	인건비	-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	지급수수료	-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)	여비	-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광고선전비	-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기 타	- 비교견적서 : 3백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필요
	지원항목	지원내용																	
	재료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
	외주용역비	-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
	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, 등록관련 비용																	
	인건비	-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																	
	지급수수료	-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임차비,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등)																	
	여비	- 창업기업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																	
광고선전비	-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																	
기 타	- 비교견적서 : 3백만 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제출필요																		
교육 및 멘토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정자 대상 오프라인 교육, 멘토링 운영</li> <li>* 해외진출 지원 워크숍,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최소 각 1회 참여 (필수)</li> <li>* 컨설팅 또는 멘토링 최소 2회 참여(필수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해외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 컨설팅, 투자자 또는 파트너 연계 비즈매칭 및 네트워킹 1주일 이내 아시아 현지 프로그램 최소 1회 참여(필수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후속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담기관 및 AC의 후속 투자유치 검토를 통해 유망한 창업가는 투자유치 추진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간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한다.  
\* 협약기간 내 휴·폐업할 경우에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## VII 평가 및 선정

### □ 평가 절차

- 요건검토 후 서면·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### □ 추진일정(안) 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(변경 시 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)



### □ 평가방법 및 기준

- 단계별 평가 방법 : 1차 서면평가 → 2차 발표평가

평가절차	평가방법	비율	비고
서면	정성평가	100%	1.5배수 내외 선정
발표			(10분 발표, 10분 질의응답) 10명 내외 선정

- 선정 주관기관 책임자 및 외부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

□ **평가항목 및 배점표** (서면/발표 공통)

평가항목	세부 내용	배점
1. 사업 이해도	1-1. 제품·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목적 1-2.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	10
2. 실현가능성	2-1. 창업아이템의 현지화 가능성, 목표 시장 타당성 2-2. 창업아이템의 차별화 방안 2-3. 창업아이템 개발·개선 방안 2-4.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대응 전략	40
3. 해외 진출 전략	3-1. 글로벌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3-2. 자금 활용 및 조달 계획 3-3. 법인 설립, 해외 매출, 해외 판매처 개척 등의 준비도	30
4. 글로벌 역량	4-1. 대표자 및 직원 보유역량 - 창업아이템 관련 역량, 어학 역량, 고용계획 등 4-2. 글로벌 진출 의지	20
<b>최 종 점 수</b>		<b>100</b>

## VIII 기타사항

-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해지될 수 있음
- 「2023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사업 운영지침」을 우선 적용하며,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창업진흥원 -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을 준용

□ **문의처**

-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팀 032-458-5061~2